

주식매매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11년 5월 24일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서)”)을 체결한다.

매수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

매도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회사: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이하 매수인, 매도인 및 회사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각각하여 “당사자”라고 함)

다음

제1장 주식의 매매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액면가 금 500원인 매도인 소유의 회사 발행 보통주식 총 120,000주(회사의 총발행주식수의 2.9%임)를 매수하는 거래(이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인 및 매도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 주식의 매매

- (1)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유 중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액면가 금 500원) 총 120,000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본 계약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 (2) 매매대금의 총액은 금 3,000,000,000원(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 (3) 매수인의 매매대상주식의 수 및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	매매대상주식(주)	매매대금(원)
신한캐피탈	120,000	3,000,000,000

제 4 조 거래의 완결

- (1) 매수인은 제6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이를 증빙하는 서면이 해당 매수인에게 제출되거나 해당 매수인이 이를 서면으로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 5월 25 일 또는 매도인 및 해당 매수인이 달리 합의하는 일자(이하 "거래완결일")에 아래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매매대금을 원화로 입금한다. 매수인의 매매거래는 매매대금 전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때에 완결된 것으로 본다.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주)원익아이피에스 이문용	신한은행 평택기업금융센터지점	140-002-743136

- (2)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의 매매거래 완결과 동시에, 매도인은 해당 매수인에게 (i) 매매대상주식의 주주가 해당 매수인으로 명의개서된 회사 주주명부 사본 및 (ii) (A) 매매거래가 완결된 매매대상주식 전부에 대한 주권 또는 (B) 주권 미발행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첨부 양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된 매도인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진술 및 보장

-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각 당일을 포함함)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 (a)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 (b) 본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및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매도인이 구속되는 각종 계약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거나 매도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모든 필수적인 동의를 얻었다.
- (c) 본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매도인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실행 가능하다.
- (d) 매매대상주식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세금이 완납되었으며, 담보 등 기타 제한 또는 부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 (e) (i) 매도인은 매매대상주식의 적법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매매대상주식은 제3자를 위한 질권, 담보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ii) 매매대상주식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은 존재하지 않으며, (iii) 매매대상주식에 관한 제3자의 조치 또는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iv)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상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또는 어떠한 성격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f)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재무상태표, 실사자료 및 다른 모든 문서들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거짓진술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시장 전망 및 추정 재무자료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g) 매도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고, 매도인의 본 계약 체결 및 의무 이행은 매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 (h) 회사의 자본금은 2,066,124,500원으로 액면가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132,249주가 발행되었다. 본 건 거래완결일 현재 회사는 위 기명식 보통주식,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 의해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381,000주임) 외에 어떠한 형태의 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를 발행, 부여 또는 이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
-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각 당일을 포함함)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각 진술 및 보장한다.
- (a) 매수인은 해당 설립 또는 결성지 국가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 또는 조합이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 (b) 매수인은 본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다. 본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본 계약은 매수인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실행 가능하다.

제 6 조 선행조건

- (1)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은 거래완결일 이전 또는 거래완결일 당일까지 아래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해당 매수인이 이를 서면으로 포기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 (a) 제5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모든 중요한 점에 대해 진실할 것
 - (b) 거래완결일까지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본 계약상의 약정과 의무를 이행할 것
 - (c)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모든 내부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
 - (d) 본 계약의 체결, 교부, 이행 및 매매거래의 완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에 요구되는 모든 정부와 제3자의 승인(정부당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적법하게 획득할 것
 - (e)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 (2)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거래완결 의무는 거래완결일 이전 또는 거래완결일 당일까지 해당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포기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 (a) 제5조에서 정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모든 중요한 점에 대해 진실할 것
 - (b) 매수인은 거래완결일까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본 계약상의 약정과 의무를 이행할 것
 - (c) 매매거래와 관련되어 매수인이 모든 내부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
 - (d) 본 계약의 체결, 교부, 이행 및 매매거래의 완결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정부와 제3자의 승인(정부당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적법하게 획득할 것
 - (e)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제 2 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 정기 경영 협의회

- (1) 회사는 기업공개 전까지 매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a)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 (b)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 (c)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 (d)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 (e)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도인 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 (2) 회사는 회사의 기업공개 전까지 매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매수인이 요청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분기별 경영협의회를 갖도록 한다. 단, 매수인이 보유하는 회사 지분이 5%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
 - (A) 분기 재무제표
 - (B) 매수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영업보고서
 - (b) 월별보고 - 다음 월 시작일로부터 25일
 - (A) 월별 경영 계획 대비 실적
 - (B) 월별 자금수지 실적

제 8 조 기업공개(IPO)의 의무

- (1) 회사와 매도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되도록 한다. 단, 당사자들은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위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기업공개란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모든 매수인이 동의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한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도록 하며, 위 동의를 통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한 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제1항의 기업공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매수인의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 (1) 매도인이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회사의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회사 발행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수예정자, 매도대상 지분의 가격, 수량 등 조건을 해당 거래완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공동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를 가진다. 어느 매수인이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매도인은 어느 매수인이 지분의 공동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단, 매도인이 매도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에 회사 발행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어느 매수인이 본 조 제1항의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수예정자가 매도인 및 해당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 해당 매수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제 10 조 지분 매수청구

- (1)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이 본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a)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공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b)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점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거나 매도인이 본 계약상 기타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2) 제1항에 의한 지분 매수청구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지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매도인에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지분에 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은 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회사 또는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제1항 (b)호에 의해 지분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에 있어서의 매매가격은 해당 매수인의 해당 지분 인수대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제2항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일까지 연복리 15%(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회사 또는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유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8%)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기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라 연복리 8% 또는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하여 합산되는 금액은 각 위약벌로 간주한다.
- (4) 본 조에 의한 어느 매수인의 지분 매수청구는 해당 매수인의 회사 및/또는 매도인에 대한 면책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 본 조에 의한 어느 매수인의 지분 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매도인은 해당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매수 청구된 해당 매수인 보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경업금지

매도인은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과 동일·유사하거나 관련시장에 속하는 영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다만,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 및 매도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은 제외 함). 단, 스틱투자조합 및 SSF Capital이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합계가 총 5% 미만이 됨과 동시에 코에프씨우리그로쓰챔프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이 5%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기업공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지분희석방지

매도인 또는 회사는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까지는 모든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가 주당 매매대금 미만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당 매매대금 미만으로 주식이 전환, 교환 또는 인수될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처분 제한

(1) 어느 매수인이 회사의 기업공개일과 2013년 12월 31일 중 선도래하는 시점 이전에 해당 매수인에 대한 거래완결로 인하여 보유하는 회사 발행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 다만, 매도인은 회사의 경영권 행사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와 관련한 제반 의무를 준수한다.

제 3 장 일반사항

제 14 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1)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거래완결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거래완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해제 또는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 부담 또는 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b)호 또는 (c)호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단, 매도인은 어느 매수인과 관련된 사유로 다른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거래완결 의무가 해제 또는 거절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 (a)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 (b) 어느 매수인이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또는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매도인이 해당 매수인에 대하여
 - (c) 매도인이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또는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매수인에 의하여
 - (d) 거래완결이 2011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하여
- (2)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위반한 당사는 해당 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 계약상 다른 조항(제1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정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권리 포기

- (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 (2)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이행청구의 지연이나 해태, 이행청구를 하지 않거나 기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본 계약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상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를 실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각 당사자가 특정한 권리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의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비용 등 부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 및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해석

- (1)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상 어떠한 의무도 공동 또는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 어떠한 권리도 공동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본 계약상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18 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19 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의무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21%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20 조 세금

각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 21 조 비밀유지

어느 당사자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 및/또는 이행, 본 계약상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며, 그에 관한 내용을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a)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경우(다만, 공개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 (b) 법령의 규정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경우(다만, 답변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c) 이미 일반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알려진 정보인 경우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도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제 22 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상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3 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상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하 여백 및 기명 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에 있음]



이상과 같은 합의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매수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대표이사 한 도 희



매도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대표이사 이 문 용



회사: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54-3

대표이사 이 준 열



첨부

주식양도통지서

수 신: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

제 목: 주식 양도에 대한 통지

본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귀사 발행 보통주식(액면가 금 500 원) 총 120,000 주를, 2011년 5월 25 일 기준으로 다음의 매수인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양도함을 통지합니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120,000주
------------	----------

위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본인은 위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동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11년 5월 25 일

매도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확정일자)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

주식양도통지서

수 신: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

제 목: 주식 양도에 대한 통지

본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귀사 발행 보통주식(액면가 금 500 원) 총 120,000 주를, 2011년 5월 25일 기준으로 다음의 매수인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양도함을 통지합니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120,000주
------------	----------

위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본인은 위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동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11년 5월 25일

매도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확정일자) 2011년 5월 25일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

계정번호	001-01-210923	단위	원화
날짜	거래처명	입출금	출금액
	/주식판고주수:#3,000,000		
	총교정액 (2011.05.02 09:52:30 청탁)		
	주식(주)원익미포리월드(A104830)		#3,000,000
110525	타사출고	#120,000	원화
	(주)원익미포리월드/신한금융투자(태평로)/주식판고주수:#2,880,000		
	판교정액 (2011.05.25 12:40:28 청탁)		
	주식(주)원익미포리월드(A104830)		#2,880,000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34-81-11323

법인명(단체명) : 신한캐피탈 (주)

대 표 자 : 한도희

개업 년월일 : 1991년 04월 20일 법인등록번호 : 135011-0034400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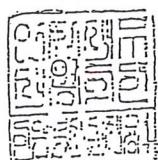
이사원에 대한 대주주로 설립 기업 신사(新社)를 통해 기관화되며, 여정사(易經社)는 대주주로 설립 기업 신사(新社)로 전환된다.

교 부 사 유 : 정정



2006 년 08 월 08 일

안산세무서장



사 용 인 감 계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및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귀중



상기 인감을 신한캐피탈(주)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 확인합니다.

사 용 부 서 : 투자금융본부 PE운용팀

사 용 용 도 : 주식매매계약서 날인

2011년 5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신 한 캐 피 탈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한 도 회 (인)



유첨 :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등기부등본 1매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번호 : 135011-0034400



상호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본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대표이사 한도희

(531020-1038025)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05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009510101424035000111101201101C1B6C8A3C7F619750702 20

발급확인번호 BALS-QEUV-JUR1

- 1/1 -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번호 : 150111-0101662



상호 :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본점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

대표이사 이준열

(470908-1802421)

관할등기소 :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04월 2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PALS-CDJA-JMS7

40009500061611204100111101201501BEE7B8ED19791205 20

- 1/1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317-81-02448

법인명(단체명) : (주) 원익머트리얼즈

대 표 자 : 이준열

개업년월일 : 2006년 12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50111-0101662

사업장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54-3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54-3

사업의종류 : **[업태]** 제조업
제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종목] 산업용가스제조업
가스공급시설설계.제조
토지임대
기계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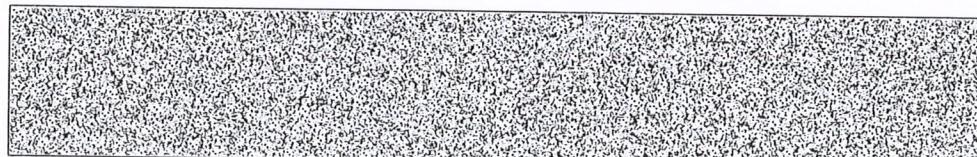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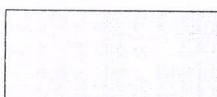
교부사유 : 업종 추가

원본대조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1년 04월 11일
동청주세무서장



국세청